

원자력통제교육의 교육시간,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

(제141조 관련)

교육대상	교육시간		교육방법	교육내용
	신규교육	보수교육		
영 제15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	16시간 이상	매년 8시간 이상(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 우 실습교육에는 매년 2시간 이상)	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.	• 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 및 국제협약 • 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 사항 • 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•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•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• 검사장비에 관한 사항 • 핵물질 등의 계량관리 보고에 관한 사항
영 제15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8시간 이상	매년 4시간 이상(3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때 우 실습교육에는 매년 2시간 이상)	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.	• 원자력통제에 관한 법령 및 국제협약 • 원자력통제 정책에 관한 사항 • 핵물질 등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•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•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비고: 신규교육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된 때부터 각각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.